

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

Rev.0

배포부서	전 부서	배포일	2024.03.04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1. 목 차	Rev	0

0.1 목차	2
0.2 개정이력	3
1. 총칙	4
2. 부칙	8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·개정일자	2024.03.04
	02. 개정이력	Rev	0

제·개정 차수	제·개정일	제·개정	제정내용	비고
0	2024.03.04	제정		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·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규정(이하 ‘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’)은 (주)만보중공업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가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,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와 부당한 행위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및 준법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 내부고발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“내부고발시스템”란 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
- 2) “CP운영팀”란 CP(Compliance program)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3) “자율준수관리자”란 회사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.

제3조(내부고발의무 및 범위)

- 1)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.
- 2) 내부고발시스템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일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(1)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
 - (2) 거래제한, 입찰담합 등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
 - (3) 부당한 반품, 위탁취소 등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
 - (4) 기타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
 - (5) 납품대금연동 협약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·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4조(내부고발 내용 및 방법)

- 1) 내부고발의 내용은 형식에 제한 없이 관련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, 고발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.
- 2) 임직원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부고발의 행위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.

- (1) 회사 홈페이지 “공정거래위반신고” 게시판 신고
- (2)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의 유선을 통한 신고
- (3)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에게 우편 발송을 통한 신고
- (4)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의 이메일을 통한 신고
- (5)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에게 대면 상담을 통한 신고
- (6) CP운영 SNS 계정 메신저를 활용한 신고

제5조(신고내용의 처리)

- 1) CP운영팀의 내부고발시스템 담당자는 제4조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 신고 접수를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조사팀 구성여부를 결정한다.
- 3) 조사팀은 암행점검 등을 통한 추가 검증을 통해 관련 임직원 또는 부서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, 인사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4)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 내용과 조사경과 및 조치 내용과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5) 기타 세부사항은 [별첨자료1]을 참조한다.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·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6조(신고자 보호)

- 1) 신고자는 원하는 경우 내부고발시스템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, 자율준수관리자와 CP운영팀은 신고자의 신상 또는 신고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2) 신고자에 대하여 익명성 보장 등 권리를 보장하고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우 관련 사실의 진위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.

제7조(조사팀의 구성 및 조사원의 독립성 보장)

- 1)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와 조사팀이 내부고발 신고내용의 정당하고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, 객관성, 중립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2) 대표이사는 내부고발 신고내용의 조치결과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와 조사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과 보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) 조사팀은 독립성, 중립성, 객관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보상)

- 1)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 내용이 회사의 이익 등에 기여한 정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표창을 의뢰하거나,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. 단, 신고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2)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신고자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 등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는 이를 감경 조치할 수 있다.

제9조(무고 등의 금지)

- 1) 임직원은 내부고발시스템을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, 음해, 근거 없는 비방 등 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·개정일자	2024.03.04
	1. 총 칙	Rev	0

제10조(보고 및 기록물 관리)

- 1)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에게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결과의 문서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	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규정 메뉴얼	제·개정일자	2024.03.04
	2. 부 칙	Rev	0

제2장 부 칙

1)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4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[별첨1]

